

# 유권자 등록

## 과 투표

뉴욕시 선거관리 위원회  
32 Broadway, 7 층  
New York, New York 10004

---

본 팸플릿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212) V-O-T-E-N-Y-C**  
**1-866- V-O-T-E-N-Y-C**

**Revised 12/16/2009**

## 목차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역할.....	3
보로 선거 관리 위원회 주소 및 전화 번호.....	4
유권자 등록.....	5
정당 가입/예비 선거 투표.....	6
유권자 등록 유지.....	7
부재자 투표.....	8
투표 장소.....	9
뉴욕시 선거들에 관한 유권자 안내.....	10
선거/헌법 개정안/국민 투표의 차이.....	11
선거일 투표.....	11-13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	14-18

##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역할

---

뉴욕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각 보로의 양 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 모두 1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며, 추천된 선거 관리 위원들은 시 의회의 임명을 거쳐 임기 4 년간의 직무를 수행한다. 선거 관리 위원들은 선거 관리 위원회 본부와 5 개 보로 선관위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당 으로 구성된 간부들을 임명한다. 뉴욕시 선관위는 뉴욕주 선거법에 따라 뉴욕시내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유권자 등록 신청서 처리
- 유권자 등록 기록 유지 및 갱신
- 후보자 청원서/ 공문 처리 및 확인
- 후보자 및 선거 대책 위원회의 선거 자금 공개 명세서 보관
- 선거 실시를 위해 각종 투표소 요원 모집, 교육 및 임무 배당
- 투표소 운영 관리
- 각 유권자의 투표소 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권리를 보장
- 투표수 총계 및 확인 증명
- 선거 자료를 이용하여 유권자 접촉, 홍보 교육 실시
- 다양한 세부 선거 구역 지도 준비

## 보로 선거 관리 위원회 주소 및 전화 번호

---

맨해튼 선거 관리 위원회  
200 Varick Street, 10<sup>th</sup> Fl.  
New York, New York 10014  
(212) 886-2100

퀸즈 선거 관리위원회  
126-06 Queens Boulevard  
Kew Gardens, New York 11415  
(718) 730-6730

브롱스 선거 관리 위원회  
1780 Grand Concourse  
Bronx, New York 10457  
(718) 299-9017

스태튼 아일랜드 선거 관리 위원회  
1 Edgewater Plaza, 4<sup>th</sup> Fl.  
Staten Island, New York 10305  
(718) 876-0079

브루클린 선거 관리 위원회  
345 Adams Street, 4<sup>th</sup> Fl.  
Brooklyn, New York 11201  
(718) 797-8800

전화 교환대  
1-212- VOTE-NYC (868-3692)  
1-866- VOTE-NYC  
TDD (212) 487-5496 (청각 장애인 용)

뉴욕시 선거 관리 위원회 본부  
32 Broadway, 7<sup>th</sup> Fl.  
New York, New York 10004  
(212) 487-5300

전화교환대는 선거 관리 위원회 직원들이 70 통의 전화를 동시에 수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화 교환대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근무시간에는 전화로 투표소 위치, 유권자 등록 상황, 유권자 등록 마감일자, 투표기 사용법과 같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신청서: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 및 투표소 근무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다. 바쁜 선거 기간에는 전화 교환대 근무 시간을 연장 한다. 전화 교환대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 응답 시스템 (IVR)” 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 자동 응답 서비스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녹음 되어 있다. 보통 근무 시간 이후에는 “자동 교환원” 이 신청서를 원하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녹음 한다

## 인터넷

선거 관리 위원회 웹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은: 선거 일자;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취득하는 안내, 직접 프린트해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낼 수 있는 유권자 등록 신청서; 5개 보로 선거 관리 위원회 주소 및 전화번호; 선거구 지도; 선거일 투표소에 대한 교통편 지도 등이다. 우리 웹사이트 주소는 <http://vote.nyc.ny.us>

## 유권자 등록

---

### 자격

뉴욕시 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신청자는:

1. 미국 시민 이어야 한다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 버진 아일랜드 출생자 포함).
2. 최소한 30 일간 뉴욕시에 거주 하여야 한다.
3. 차기 선거때 까지 만 18 세이어야 한다.
4. 현재 복역중 이거나, 중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중죄 판결의 가석방 중이면 안된다.
5. 정신 박약자로 법정 판결을 받았어도 안된다.
6. 타 지역에서 투표할 권리를 주장 해서는 안된다 (뉴욕시 외).

연중 언제든지 등록할 수는 있지만, 선거때 투표하려면 적어도 차기 선거일 25 일 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 시키거나, 신청서에 우편소인 이 찍혀있어야 한다.

### 등록 방법- 유권자 등록 신청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파란색 또는 검정색 펜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 로 보내거나 보로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 시킨다.

신청서는 본인이 서명한 원본이라야 한다. 팩스로 보내면 안된다.

미국 정부는 2002 년 “미국 투표 후원법(**Help America Vote Act, HAVA**)”, 처음 등록하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권자 본인의 운전 면허증 번호 또는 비운전 면허 번호, 사회보장 카드의 끝번호 4 자리, 은행 명세서, 거주지 시설사용 청구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이러한 신분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바뀌었다.

그러나, 만일 선거 등록을 할 때 이와 같은 신분증 번호를 기입하지 않았다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처음으로 등록 하는 유권자에게 요구된 신분에 관한 자료를 기입 하라는 요청의 편지를 우송할 것이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선거 관리 위원회 전화번호: **212-VOTE-NYC (868-3692)** 또는 **1-866-VOTE-NYC** 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신청서는 차량 등록국, 공립 도서관, 우체국 및 여러 관공서에서도 구할 수 있다.

뉴욕시 에서 등록한 유권자 등록은 영구적이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을 계속 유효 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는 주소 변경, 혹은 이름 변경시에 반드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 정당 가입

---

### 뉴욕주에서의 정당 가입:

신청서에 정당 가입 선택란이 있다. 정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정당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란에 표시하면 된다.

새로 바뀐 등록 신청서에는 2006년 투표 상태에 따라 정당 이름이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있다.

- 민주당
- 공화당
- 독립당
- 보수당
- 근로가족당

이외의 정당에 가입을 원할 때는 기타(기명)란에 정당 이름을 써 넣으면 등록 시스템에 그 정당 이름의 첫 15글자가 입력된다.

일반적으로 “기타” 또는 “정당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선택한 등록자는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 정당 가입과 예비 선거

대부분의 예비 선거에는, 뉴욕시에서 예비 선거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정당 중 한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 만이 총 선거에 출마할 본인의 정당 후보자를 지명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

정당 지명으로 각 공직에 임명된 후보자들은, 예비 선거를 거치지 않고 총 선거에 선출한 다른 독립 후보자들과 함께 총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된다.

### 정당 예비 선거에 투표 하려면

예비 선거는 정당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의 관계가 달리 없으면 예비 선거를 실시하는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 만이 본인 소속 정당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유권 등록자들은 총 선거와 보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 정당 가입을 변경 하려면

정당 가입 변경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변경을 표시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내면 된다. 가입 변경 기록을 처리하는 대로 정당 변경이 기록된 새 유권자 카드를 보낸다. 가입한 정당을 변경한 그해에는 원하는 새 정당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주의:** 그 정당 가입 변경은 차기 11월 총 선거 실시 **일주일후에** 유효하다. 정당 가입 변경을 할 수 있는 최종 일자 는 총 선거를 위한 최종 등록 일자와 동일하다 (총 선거일로 부터 25일전 까지).

## 유권자 등록을 계속 유지하려면

---

### 법에 의하면

특정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는 유권자의 거주지 주소가 결정해 준다. 거주지 주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뉴욕주 법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소 변경 후 25일 이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로 주소변경 통보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유권자 등록 변경을 하려면

서신으로 본인의 유권자 등록 변경 (주소 또는 이름 변경)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 에 변경 사항을 기입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내도 된다.

### 유권자 등록을 유효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유권자 지속 등록을 위하여 한가지 방법을 개발하였다:

**NCOA (국내 주소 변경록 National Change of Address)** /시스템과 협조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는 매월 등록자 명단과 미 우정국의 이사 기록을 비교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미 우정국이 마련한 이 제도로 선거 관리 위원회는 뉴욕주 내에서 또는 다른 주로 이사 한 유권 등록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사한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이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통지서를 보낸다.

매년 8월에는 뉴욕시 내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차기 선거 일자, 유권자의 **ED/AD** 선거구, 투표소 위치, 선거 시간 등을 알리는 선거 안내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유권자들에게 보낸 안내 통지서가 배달이 안되어 선거 관리 위원회로 반송되면, 유권자들은 확인 통지서를 받게 되며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a) 이사 확인; 또는
- b) 이사를 안했다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한다.

뉴욕시 내에서 이사를 했으면 주소 변경 통지서 또는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주소 변경란에 표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부재자 투표

---

뉴욕시 외로 출타, 복역중 (중범죄 제외), 질병, 장애, 병원 입원, 또는 장기 요양원 입원으로 인해 선거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 등록자들은 부재자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뉴욕시 유권자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다:

1.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에 가서 직접 투표 한다.
2.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 한다.

### 직접 부재자 투표

직접 부재자 투표는 **확인 검증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보로 선거 관리 위원회로 보내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에 마감한다.

직접 부재자 투표는 투표자 본인이 해당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5 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 전 주말에도 투표할 수 있다.

### 우편 부재자 투표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은 서신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칠(7)일 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선관위**에서 구할 수 있다.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 성명
- 유권자등록 거주지 주소
- 우편 주소 (거주지와 다를 경우)
-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요청하는 이유
- 선거 종류( 예비 선거, 총 선거, 보궐 선거) 및 선거일 자
- 서명

투표에 집계 되려면, 부재자 투표용지( 및 작성된 신청서) 는 선거 하루 전까지 우편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늦어도 선거후 칠(7)일 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 긴급 부재자 투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마감일자가 지났고, 사고나 급환으로 선거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허가서를 지참한 대리인을 보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 신청서와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당일 오후 9 시 까지 접수하면 된다.

## 부재자 투표 방법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으면, 거기에 인쇄된 지시 사항을 읽도록 한다. 표시하는 방법은 선택한 칸 옆의 타원을 완전히 칠한다. 그밖에 어떤 표시도 하지 않는다. 투표지의 어디에도 쓰지 않는다. 투표지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투표용지에 없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기를 원할 때이며 - 기명란에 후보자 이름을 쓰고 그 기명란에 있는 타원을 완전히 칠한다. 제안에 대한 투표가 있으면, 투표용지 뒷면에 나타난다. “예” 또는 “아니오” 옆에 있는 타원을 칠해 투표한다. 투표용지들은 스캐너로 점검하여 집계되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투표용지에 선택한 칸 옆의 타원을 칠한 다음, 투표용지를 접어 작은 봉투에 넣어, 봉투 뒷면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후에 밀봉하여, 선관위로 보내는 큰 봉투에 넣는다. 그다음, 위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 규정대로 적절한 우표를 동봉한 투표용지를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 투표 장소

투표소는 시내 곳곳에 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주소가 소속된 맞는 투표소와 선거구(ED/AD)에 왔는지 확인한다.

투표소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 까지 개장한다.

투표소 위치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 [온라인 투표소 주소록](#)에서 찾는다
- 투표자 [전화 교환대](#) 1.866.VOTE.NYC로 문의한다.
- 정확한 주소를 [이-메일](mailto:vote@boe.nyc.ny.us) [vote@boe.nyc.ny.us](mailto:vote@boe.nyc.ny.us)로 보내면 투표소를 이- 메일로 알려준다 (주소란에 보로를 적을 것).

## 투표소의 편의시설 제공

선거 관리 위원회는 노인과 장애인들 을 위해 대부분의 뉴욕시 투표소의 각종 장애물들 을 제거함으로써 불편없이 투표장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최선을 다 하였다:

-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투표자들을 위해 건물 경사로나 임시 경사로를 만듦
- 출입문, 난간, 전등 시설과 통로 등의 보수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장소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옮겼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투표소에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본인의 투표소가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등록부서](#)에 전화하여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TDD 서비스)

전화 교환대에 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TDD 사용 가능한 청각 장애인은 문의할 수 있다.

TDD 전화번호: (212) 487-5496.

## 영구적 부재자 투표

외출할 수 없는 유권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는 지정된 거주지에서 영구적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서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때 마다 자동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선거 하루 전 까지 우편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늦어도 선거후 칠(7)일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접수 되어야 한다.

## 뉴욕시 선거들에 관한 유권자 안내

---

아래와 같은 공직들에 대한 선거가 뉴욕시 투표용지에 나타날 수 있다.

- 미국 대통령 과 부통령 선거
- 미국 연방 상원의원
- 미국 연방 하원의원
- 뉴욕주 지사와 부지사
- 주 검찰 총장
- 주 감사원장
- 뉴욕주 상원 의원
- 뉴욕주 하원 의원
- 뉴욕 시장
- 뉴욕시 공익옹호관
- 뉴욕시 감사원장
- 보로장
- 뉴욕 시의원
- 보로 검사장
- 유언 검증 판사
- 주 대법원 판사
-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

## 선거/헌법 개정안/국민 투표의 차이

---

### 선거 일정

공직을 위한 정당 예비 선거는 9월에 실시되며 총 선거는 11월에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 예비 선거가 3월에 실시된다.

### 예비 선거와 총 선거

**예비 선거**는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이 총선거 공직에 출마할 후보자의 선출과, 실제로 당직에 봉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예비 선거는 정당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의 관례가 허용하지 않는 한, 뉴욕시 내에서 실시하는 예비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만이 정당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총 선거**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 된다. 정당 예비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들은 독립적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함께 총 선거에 진출한다.

### 헌법 개정안과 국민 투표 법안

주 의회, 시장 및/또는 시의회는 특정한 법을 제안 할 수 있다.

주 헌법 개정, 뉴욕시 헌장, 법안 개정 또는 정부 재정 경비 승인등을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뉴욕시 유권자 투표용지에 첨가 하여 유권자 들에게 질문 한다 . 그 외로, 투표로 결정 될 제안이 법규정에 부합되며 제안 지지자들이 뉴욕시에 등록된 총 유권자수의 최소한 5%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투표용지에 인쇄될 수 있다 .

### 투표용지의 질문들

투표용지의 질문들은 주 헌법, 시 헌장 및 주 법령의 적절한 조항에 따라서 총 선거 투표용지에 인쇄된다.

### 선거일 투표하려면

---

#### 첫째 — “투표 장소”

귀하의 주소가 속해 있는 투표소와 선거구(E.D.)에 왔는지를 확인 한다.

투표소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 까지 개장한다.

[투표소 위치 및 확인은 여기를 클릭한다.](#)

#### 둘째 — “사전 지식을 갖고 투표하자”

투표하는 줄에 서기 전에 먼저 벽에 붙은 견본 투표지와 투표기 사용법을 참조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셋째 — “서명한다”

투표 하려면 유권자 등록 카드, 또는 연간 자료 통지서에 적힌 선거구 투표소로 가야 한다. 또는 투표소에 근무하는 투표소 안내원에게 주소 기록부에서 찾아 간 투표소와 선거구가 맞는지 확인한다. 컴퓨터로 작성된 유권자 명단에 서명한 후 투표소 요원이 주는 투표카드를 들고 투표기로 간다.

### 넷째 — “도움이 필요하면”

양당에서 나온 교육받은 투표소 요원은 물론 투표자 본인이 선택한 사람으로 부터 투표기 사용을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나 노동 조합원은 투표자를 도와 줄 수 없다. 지정된 투표소에서 통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다섯째 — “투표기로 투표하려면”

[투표기 사용법에 관한 비디오를 보려면 여기 클릭한다. - 비디오 접속](#)

- a) 투표하려면 투표기에 달린 커튼을 열고 들어 간다.
- b) 빨간 큰 손잡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잡아 당긴다. 후보자 선택이 끝날 때 까지 이 손잡이에 다시 손을 대면 안된다.
- c) 원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선택한다. 창구에 “X” 자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 실수했을 경우, 손잡이를 원 상태로 돌리고 원하는 후보자 손잡이를 돌려 선택한다.
- d) 어떤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없는 후보에게 투표하려면 후보자 이름을 기입하여 투표한다. 투표기 왼쪽에 일렬로 나열된 번호붙은 창구들 위에 있는 단추; 이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투표기의 지정된 창구를 연다; 단추를 누른 채로 창구를 열어서; 창구에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기입해 투표 한다; 연필이나 펜이 준비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무도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후보자들이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마련할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은 기존의 방법으로 투표한다.
- e) 투표가 모두 끝났으면 작은 손잡이들은 내린 상태로 두고 빨간 큰 손잡이를 왼쪽으로 끝까지 잡아 당긴다. 작은 손잡이들이 원 상태로 돌아가고, 이름이 기입된 창구가 닫히면 투표자의 투표는 집계될 것이다.
- f) 커튼을 열고 나온다.

### 여섯째 -- “투표용지에 투표하려면”

투표기 대신에 종이투표지를 사용할 세가지 경우가 투표소에서 생긴다:

- 선거구에 있는 투표기에 고장이 생기면 , 긴급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소 문을 닫으면 투표소 요원들은 투표기 투표용지와 함께 긴급 투표용지를 점검, 집계한다.
  - 투표소 요원이 준 투표용지를 가지고 종이상자로 된 기표소로 가서 연필이나 청색 또는 흑색 펜으로 표시하여 투표한다.
  - 투표 방법은 선택한 칸 옆에 있는 타원을 채워 표시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떤 다른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투표용지를 접어 테이블에 있는 투표함에 넣는다.

- 투표를 마친다.
- 이름이 유권자 명단에 없거나, 그 명단에 서명이 누락됐을 경우, 선서 투표 용지와 그것을 넣어 밀봉할 봉투를 준다. 투표소 문을 닫으면, 투표를 집계하기 전에 밀봉된 봉투를 선관위에 가져와서 등록을 확인 한다.
  - 투표소 요원이 준 봉투 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종이상자로 된 기표소로 간다,
  - 봉투작성을 끝낸다.
  - 연필이나 청색 또는 흑색 펜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한다.
  - 투표 방법은 선택한 옆의 타원을 채워 표시하며, 투표용지에는 어떤 다른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 투표용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 봉투를 밀봉한 다음 투표소 요원에게 주고,
  - 투표를 마친다.
- 미국투표 후원법(HAVA)에 따라 ,투표기로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제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선서 투표용지와 그것을 넣어 밀봉할 봉투를 준다. 투표소 문을 닫으면, 투표를 집계하기 전에 밀봉된 봉투를 선관위에 가져와서 등록 확인을 한다.
  - 투표소 요원이 준 봉투 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종이상자로 된 기표소로 간다.
  - 봉투작성 을 끝낸다.
  - 연필이나 청색 또는 흑색 펜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한다.
  - 투표방법은 선택한 옆의 타원을 완전히 칠한다. 투표용지에 어떤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 투표용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 밀봉한 다음 투표소요원에게 주고,
  - 투표를 마친다.

---

##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

### 유권자 안내

예비 선거와 총 선거를 위한 유권자 안내 책자는 **뉴욕시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만** 뉴욕시 선거자금 관리 위원회에서 발간한다. 이 안내 책자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의 가정에 예비 선거를 위해서는 8월말에, 총 선거를 위해서는 10월 중순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책자를 받지 못하면 뉴욕시 선거자금 관리 위원회로 전화 212-306-7100 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또한 거주지역에서 개최하는 입후보 선거유세와 토론회, 연방 및 뉴욕주 공직 출마 후보자 프로필에 대한 뉴스기사도 살펴보기 바란다.

## “누가 투표 할 수 있는가?”

총 선거나 예비 선거에 투표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일 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 선거일 전 부터 최소한 30일 이상 현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중범죄 판결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면 안되고, 타지역에서 투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주의: 본 웹사이트에 있는 유권자 등록양식은 뉴욕시 거주자만을 위한 양식이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탠포드 아일랜드 포함) 작성하여 등록마감일 전에 보낼 것을 명심한다.

[읽기](#)

## “어디서 우편 등록 신청서를 받는가?”

정확한 우편 주소(주소란에 보로를 기입)를 이-메일 [vote@boe.nyc.ny.us](mailto:vote@boe.nyc.ny.us) 로 보내 문의하든지, 또는 무료전화 1-866-VOTE-NYC (뉴욕시외에서 전화할 경우, (212)-VOTE-NYC (868-3692))로 연락하여 우편료가 지불된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지역 우체국, 도서관 또는 차량국 사무실에 가면 구할 수 있다. 더 알고 싶으면 [유권자등록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읽기](#)

##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가?”

그렇다.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유권자등록 신청서와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어떤 [보로 선거 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가도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유권자등록 신청 후 4-6 주내로 등록카드를 받지 못하면, 신청서가 접수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교환대](#) 무료전화 1-866-VOTE-NYC 또는 뉴욕시외에서 전화할 경우 (212)-VOTE-NYC로 문의 할 수 있다.

[읽기](#)

## “다른 주에 거주하지만 뉴욕시에서 재학 중이면,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가?”

만약 다른 주에 거주지가 있고 뉴욕시에서 재학중이지만 뉴욕에서 유권자등록을 하기 원한다면, 뉴욕시 주소를 기입한 유권자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 유권자 등록은 다른 유권자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새 유권자등록을 하면 다른 주에서 한 유권자등록은 취소된다.

[읽기](#)

## “해마다 등록해야 하는가?”

아니다. 한번 등록하면, 영구 등록한 것이다. 이름, 주소 또는 정당가입 변경은 새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한다. 이사하면, 재 등록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유권자가 제출한 뉴욕시 안에서의 주소변경 통지서와 정당 변경 통지서를 받으면 이를 바꿔주고, 주소변경으로 인해 선서투표를 한 유권자를 위해서는 새 주소로 이전할 것이다.

예비 선거, 보궐선거 또는 총 선거일로 부터 최소한 20 일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가 주소변경 통지서를 받으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주소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읽기

## “어떻게 어디서 투표하는지 알 수 있는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투표장소를 알리는 엽서를 8월 중에 보낸다. 눈여겨 지켜보기 바란다! 선거일 알아야 할 선거구가 적혀있다. 또는, 정확한 집 주소(주소란에 보로를 기입)를 적어 [vote@boe.nyc.ny.us](mailto:vote@boe.nyc.ny.us)로 이-메일로 문의한다.

읽기

[온라인 투표소 주소록을 이용하려면 여기 클릭한다.](#)

## “어떻게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나타날 수 있는가?”

뉴욕주에서는,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일정한 수의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접수시킴으로써 투표지에 나타난다. 필요한 서명 숫자는 관직에 따라 다르며, 후보자가 정당지명이 필요한지 또는 독립 후보로 출마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읽기

## “어떤 사람이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적절한 지역구에 거주하는 정당에 가입한 회원들만이 소속정당의 지명이 필요한 후보들의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는 그 유권자가 또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이미 서명하지 않았다면 총 선거 에서 독립후보로 출마하려는 후보를 위해 청원서에 서명해도 된다.

읽기

##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을 염려해야 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부 유권자들이 청원서에 서명하기를 주저함으로써 정당지원이 약한 후보들이 필요한 숫자의 서명을 확보하여 선출직에 출마하기가 어렵다.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은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읽기

## “예비 선거란?”

예비 선거는 뉴욕주의 공식 정당들이 정당별로 치르는 선거이다. 예비 선거는 총 선거에 앞서 실시되며, 정당직은 물론 공직에 출마할 당 소속 후보들을 그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에게 지명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경쟁자가 없으면 예비 선거는 없다.  
읽면으로

## “왜 정당에 가입해야 하나?”

청원서에 서명하고 예비 선거에 투표하려고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은 총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는 무소속 유권자들보다 많은 정치력을 행사한다.

더욱이, 총 선거에서 귀하의 정당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의무는 없다. 11월 총 선거에는, 어떤 당이던 관계없이 아무 후보에게나 투표할 수 있다.  
읽면으로

## “어떻게 정당 가입을 하는가?”

유권자등록 신청서에 본인 스스로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재등록하여 당에 가입한다.  
읽면으로

## “선거일 투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선거일 시외로 출타 중 이거나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으면, 부재자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다.  
읽면으로

## “어떻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는가?”

부재자 투표용지는 선관위로 서신 또는 무료전화 1-866-VOTE-NYCL나, (212)- VOTE-NYC, 또는 이-메일 [vote@boe.nyc.ny.us](mailto:vote@boe.nyc.ny.us)로 요청하거나 (주소란에 보로를 기입), 웹사이트 [부재자 투표 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읽면으로

## “투표용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투표용지는 스캐너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다. 선택한 옆의 타원을 채워 표시한다. 그밖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연필이나 **청색** 또는 **검은색** 펜으로 타원을 칠한다. 투표지 다른 곳에는 표시하면 안된다. 만약 투표지에 없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려면 - 기명란에 후보자 이름을 기입하고 기명란에 있는 타원을 채워 표시한다. 만약 투표할

제안이 있으면, 투표지 뒷면에 있다. “예” 또는 “아니오” 옆에 있는 타원을 칠해 투표한다.

윗면으로

## “신체 장애인은 어디서 투표하는가?”

현재 대다수의 투표소는 신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투표소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면, 유권자등록 기록을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와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가까운 장애인용 투표소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로 투표해도 된다. 장기 또는 영구적인 환자, 또는 장애인이라면, 영구 부재자투표를 신청하여 매번 예비 선거와 총 선거에 앞서 자동적으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를 클릭하여 정보를 얻는다.](#)

윗면으로

## “투표하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나?”

2002 년 제정된 “미국 투표 후원법” (HAVA)에 따라, 처음으로 등록하는 모든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또는 신청서와 함께 운전 면허증 번호나 사회보장 카드 끝번호 4 자리 같은 신분증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운전 면허증 번호나 사회보장카드 끝번호 4 자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서 사본을 동봉한다: 비운전증 번호; 현재 유효한 사진 신분증; 현 주거지 시설 사용 청구서; 은행 명세서; 정부 수표나 봉급 수표; 이름, 주소가 적혀 있는 정부 문서. 만약 선거 때 인정할 수 있는 신분증 하나도 제시 못하면, 투표기로 투표하지는 못하지만, 선서 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자의 투표권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윗면으로

## “투표소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투표소에 들어 가면, 한개 또는 더 많은 선거구 (E.D.)에 테이블과 투표기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컴퓨터로 알파벳 순으로 작성된 유권자 명단에 있는 서명사본 위에 서명하라고 할 것이다.

윗면으로

## “투표할 수 없다고 하면?”

만약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누락됐으면, 본인의 거주지 소속 선거구에 왔는지 검사원에게 확인을 청한다. 정확한 선거구의 확인이 중요하다. 누락된 이유는 등록 마감일이 지나서 접수됐거나, 예비 선거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표할 수 있다. 선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서 유권자 명단을 조회하여, 실제로 투표자격이 있고, 맞는 투표소에서 투표했다면, 투표는 집계될 것이다. 투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면, 차기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자격이 없다는 통지서를 받게될 것이다.

윗면으로

## “투표기 작동 방법은?”

### 투표기 작동법을 보려면 여길 클릭한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기를 작동하기 위하여 빨간 큰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투표를 다 마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둔다. 주어진 투표 시간은 3분 이다. ‘x’ 자가 나타날 때까지 각 후보자 이름옆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 선택한다. 선택한 후보를 변경하고 싶으면, 필요한 만큼 손잡이를 아래 위로 돌린다. 그러나, 선택을 마쳤으면, 손잡이들은 그대로 놔두고, 빨간 큰 손잡이를 잡아 당긴다. 그러면 투표등록과 집계가 된다.

윗면으로

## “도움이 필요하면?”

장애인 또는 투표지를 읽을 수 없다면, 연방법에 따라 친구나 친척이 기표소에서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투표소 요원도 도와줄 수 있다.

윗면으로

## “유권자 등록을 하면, 배심원 의무 통지서를 받게 되나?”

배심원은 유권자등록 명단은 물론 뉴욕주 납세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명단에서 뽑는다. 배심원 임무를 기피할 생각으로 귀하의 투표권을 포기해선 안된다. 납세자 또는 운전자이면 소집될 기회가 많다. 그뿐 아니라, 배심원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특권이며, 동료 배심원들에 의한 재판에 본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 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임무를 수행할 특권을 받은 것이다.

윗면으로

## “중범죄 판결이 투표권에 주는 영향은?”

중범죄로 판결받아 다음과 같으면,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할 수 없다:

- 현재 복역중; 또는
- 가석방 중

중범죄로 판결받아 다음과 같으면, 유권자 등록을 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 구류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경우;
- 만기까지 복역하였거나;
- 가석방 면제를 받았거나; 또는
- 사면받았을 경우.

다만 경범죄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감중이라도 유권자등록을 하여 투표할 수 있다. 뉴욕 법원, 타주의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유권자등록과 투표하기 위해 범죄기록에 관한 어떤 서류도 제시할 필요는 없다.